



제2910호 2023. 8. 18.(금)

www.jeonbuk.go.kr

**고 시**

- 전라북도 고시 제2023-257호 내동천 하천의 지정 해제 고시 ..... 1
- 전라북도 고시 제2023-258호 내동천 하천구역 폐지 고시 ..... 2
- 전라북도 고시 제2023-259호 내동천 폐천부지 고시 ..... 3

**입법예고**

-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-36호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..... 4
-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-37호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 15
-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-38호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... 21

**공 고**

- 전라북도 공고 제2023-141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..... 26
- 전라북도 공고 제2023-144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..... 27
- 전라북도 공고 제2023-14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..... 28

**지시사항**

- 2023. 8. 11.(금)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..... 29

**시 군**

- 익산시 공고 제2023-2183호 익산 도시계획시설(학교/원광대학교)사업 공사완료 공고 ..... 31
- 김제시 고시 제2023-50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장애인평생교육센터 증축공사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... 32
- 김제시 고시 제2023-51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... 34
- 진안군 고시 제2023-102호 진안 군계획시설(도로소로3-12호 외 1개소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... 35
- 진안군 고시 제2023-103호 진안 군계획시설(체육공원:월랑공원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... 37

**발행 전라북도 (편집 공보관실 ☎(063)280-2186)**

**(54968)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**

전라북도 고시 제2023-257호

## 내동천 하천의 지정 해제 고시

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“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”의 심의를 받아 「하천법」 제7조제3항에 의거 내동천 지방하천의 지정을 해제하고 「하천법」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전라북도지사

2023년 8월 18일

### 1. 하천의 지정해제 내역

구분	하천명	하천 등급	하천의 구간								하천 연장 (km)	결정 (변경)일
			기 점				종 점					
			시도	시군구	읍면동	경계	시도	시군구	읍면동	경계		
당초	내동천	지방	전북	무주	적상	방이리 62번지선	전북	무주	적상	방이리 330번지선 삼유천(지방) 합류점	3.00	1982.10.11. (전북260호)
변경			-	-	-	-	-	-	-	-	-	2023.08.18

### 2. 지정해제 사유

-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결과(물통합관리과-8742)에 따라 지방하천 지정해제(일부구간 소하천 지정)

전라북도 고시 제2023-258호

### 내동천 하천구역 폐지 고시

「하천법」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전라북도청(물통합관리과), 무주군청(환경과)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전라북도지사

2023년 8월 18일

하천명	하천등급	하 천 구 간			면적 (㎡)	폐 사 이 유
		기 점	종 점	거리 (km)		
내동천	지방하천	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61번지선	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30번지선 삼유천(지방) 합류점	2.80	64,311	내동천 지방하천의 지정해제 (2023.08.18)

- 첨부 열람서류 : 1.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
 2.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(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)

전라북도 고시 제2023-259호

## 내동천 폐천부지 고시

「하천법」 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내동천 지방하천 지정 해제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(국·공유지)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전라북도(물통합관리과), 무주군청(환경과)에 비치된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전라북도지사

2023년 8월 18일

1. 하천의 명칭 및 종류 : 내동천 지방하천
2.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: 2023. 8. 18.
3. 폐천부지의 위치 :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33-1번지 등 65필지
4. 폐천부지의 종류 및 면적

하천명	지목	구분	계	관리계획	발생사유
내동천	계	필지수(EA)	65	보전 (소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등)	지방하천 지정해제
		폐천면적(m <sup>2</sup> )	45,959		
	구	필지수(EA)	1		
		폐천면적(m <sup>2</sup> )	484		
	답	필지수(EA)	3		
		폐천면적(m <sup>2</sup> )	464		
	도	필지수(EA)	55		
		폐천면적(m <sup>2</sup> )	15,727		
	천	필지수(EA)	5		
		폐천면적(m <sup>2</sup> )	29,089		
	전	필지수(EA)	1		
		폐천면적(m <sup>2</sup> )	195		

- 첨부 열람서류 : 1. 폐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 
2. 폐천구역의 지형도면(축척 5,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)

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23-36호

「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8일

전라북도지사

###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# 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착수·처리기한 설정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여 전라북도 소송비용 업무처리를 개선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소송비용 회수 착수·처리기한 구체화(안 제11조제2호, 안 제13조)

1) (현행) 즉시 비용회수 → (개정) 회수를 위한 절차 이행(안 제11조제2호)

2) (현행) 관련 규정 없음 → (개정) 60일 이내(안 제13조)

나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(안 제6조, 안 제8조 ~ 안 제9조, 안 제11조 ~ 안 제1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현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)

다. 협의 : 기업애로해소지원단(규제심사), 감사관(부패영향평가),  
인권담당관(인권영향평가), 여성가족과(성별영향평가) 협의 완료

라. 입법예고 : 2023. 8. 18. ~ 2023. 8. 28.(10일간)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. 8. 28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(참조:법무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54968/전주시 완산구 호자로 225 전북도청 법무행정과 (전화 : 063-280-2921, FAX : 063-280-2939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법무행정과 송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063-280-2921)

5.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: 붙임

전라북도 규칙 제 호

##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전단 중 “혹은” 을 “또는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전일” 을 “전날” 로 한다.

제6조의2제5항 중 “과반수이상” 을 “과반수 이상” 으로 한다.

제6조의3제2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 중 “제80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80조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394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394조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3일전” 을 “3일 전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부담케” 를 “부담하게” 로, “즉시 그 비용을 회수” 를 “회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“강구” 를 “마련” 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사건관할” 을 “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관할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원장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⑥ ~ ⑧ (생략)

제6조의3(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) ① (생략)

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되, 지급기준은 별표 3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

제8조(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)

① ~ ③ (생략)

④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·해임,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해당 검찰청 검사장(이하 “검사장”이라 한다)의 사전지휘를 받아

-----  
-----  
-----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3(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그 밖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야 한다.

1. 반소(反訴)·취하·화해  
· 청구의 포기·인낙·  
「민사소송법」 제80조의  
규정에 의한 소송탈퇴

2. 항소·상고의 제기와 포  
기 또는 그 취하·「민사  
소송법」 제390조제1항의  
단서 및 제394조의 규정에  
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  
지 않을 취지의 합의

3. ~ 5. (생략)  
⑤ ~ ⑫ (생략)

제9조(본안 소송수행) ① ~ ③  
(생략)

④ 공동수행사건의 경우에는  
1차 변론기일 3일전까지 법  
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  
원에 제출해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11조(승소종결시의 조치) 소  
송수행부서에서는 승소판결  
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  
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.
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제80조에 따른 --  
-----

2. -----  
-----  
----- 제394조에 따른 -  
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  
⑤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본안 소송수행) ① ~ ③  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3일 전-----  
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승소종결시의 조치) 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생략)  
 2. 확정된 판결주문에 의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.

3. ~ 5. (생략)  
 제12조(패소종결시의 조치)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.

1.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은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하며, 원처분시 중대한 하자로 기인하거나 소송수행 해태 등으로 패소했을 경우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.

2. ~ 7. (생략)  
 제13조(소송비용 회수대상) 소

1. (현행과 같음)  
 2. -----  
 ----- 부담하게 ----- 회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-----.

3. ~ 5. (현행과 같음)  
 제12조(패소종결시의 조치) 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1.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마련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2. ~ 7. (현행과 같음)  
 제13조(소송비용 회수대상) --

송수행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다. 이때 신청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1. 2. (생략)

-----  
 -----  
 ----- 판결확정일로  
부터 60일 이내에 사건관할-  
 -----  
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**붙임**

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미첨부 근거규정

「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제1호  
에 해당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)

① 전라북도의회 의원·전라북도의회 위원회·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규칙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3. 작성자 : 이미연 주무관(280-2921)

**참고****관계법령** **지방재정법 제82조**

**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**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.

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-37호

「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 
일부개정함에 있어

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 
주요내용을 「전라북도

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 
합니다.

2023년 8월 18일

## 전라북도지사

###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개정이유

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운영  
업무가 독립국악원으로 이관되어 변경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간사 직책명 변경(안 제3조)

- (기존) 문화산업과장 → (변경) 전라북도립국악원장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)

다. 협의 : 기업애로해소지원단(규제심사), 감사관(부패영향 평가),  
인권담당관(인권영향평가), 예산과(재정부담), 여성가족과(성별영향평가)

라. 입법예고 : 2023. 8. 18. ~ 2023. 9. 7.(20일간)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(참조 : 도립국악원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4900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  
로 258

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(전화 : 063-290-6453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직접방문,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  
든 가능함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  
(063-290-645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  
임

<b>붙임1</b>	<b>일부개정 조례안</b>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전라북도 조례 제 호

**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산업과장” 을 “전라북도립국악원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붙임2****신·구조문 대비표****신 · 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예술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,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<u>문화산업과장</u> 이 되며,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	제3조(구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라북도립국악원</u> <u>장</u> ----- -----.  1. ~ 3. (현행과 같음)

##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

####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)

① 전라북도의회 의원·전라북도의회 위원회·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○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 
(일부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)

### 3. 작성자

○ 독립국악원 행정 6급 박현숙(063-290-6453)

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-38호

「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「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8일

## 전라북도지사

###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# 1. 개정이유

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운영 업무가 도립국악원으로 이관되어 변경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**【별표 1】** 간사 직위 변경

- (기존) 문화산업과장 → (변경) 전라북도립국악원장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협의 : 기업애로해소지원단, 감사관, 인권담당관, 예산과, 여성가족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8. 18. ~ 2023. 9. 7.(20일간)

**4. 의견제출**

가.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(참조 : 도립국악원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4900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(전화 : 063-290-6453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직접방문,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팀 (063-290-645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5.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**

전라북도 규칙 제 호

**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1]

예술단 구성(제2조 관련)

구 분	직 위	정 원
단 장	문화체육관광국장	
간 사	전라북도립국악원장	
운영위원	운영위원	12인이내(위원장포함)
교향악단	지휘자	1인
	관리교사(악보계원)	1인
	지도교사	20인이내
	어린이단원	70인이내
국악관현악단	지휘자	1인
	관리교사(악보계원)	1인
	지도교사	20인이내
	어린이단원	60인이내

※필요시 예비단원 및 견습생 등을 정원 외 모집가능

**붙임1** 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미첨부 근거규정**

○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

**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)**

① 전라북도의회 의원·전라북도의회 위원회·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**2. 미첨부 사유**

○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근거

(일부개정규칙안 시행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)

**3. 작성자**

○ 독립국악원 행정 6급 박현숙(063-290-6453)

전라북도 공고 제2023-1412호

##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전라북도지사  
2023년 8월 18일

1. 법 인 명 : 사단법인 에버독
2. 허가번호 : 제 2023-32 호
3. 소 재 지 : 전북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1-30, 1층
4. 대 표 자 : 김 미 애
5. 설립목적 : 유기동물을 위험한 환경과 질병으로부터 구조, 보호, 치료하고 다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한 동물문화 조성 기여
6. 사업내용
  - 유기되어 위험에 처한 동물 구조사업
  - 구조된 동물의 치료, 보호, 입양 및 그 지원 사업
  -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·교육 사업
  - 국내 유관기관들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 사업
  -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7. 허가일자 : 2023. 8. 3.

전라북도 공고 제2023-1440호

###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
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같은법 제4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전라북도지사

2023년 8월 18일

■ 공 고 사 항

- ① 등록번호 : 제2023-1-전라북도-17호
- ② 단체명칭 :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
- ③ 대 표 자
  - 성 명 : 유승기
  - 생 년 월 일 : 1956년 1월 7일

단체명	소재지	대표자	주된사업	등록일	비고
군산비정규 노동인권센터	군산시 신철3길 13(3층)	유승기	·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연구 · 무료노동상담 및 교육 등	2023.8.10.	

끝.

전라북도 공고 제2023 - 1450호

###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
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거 전라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전라북도지사  
2023년 8월 18일

#### ①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

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거 전라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3개 단체

연번	단체명	소재지	대표자	등록일자
1	전북전통문화연구소	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60-2번지	이동호	2011-03-02
2	전북문화진흥협의회	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가 314-5	김기수	2000-08-12
3	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전북지부	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4-120	김인술	2001-03-16

#### ② 문의처 및 회신기한

- (문의처) 전북도청 문화산업과(063-280-3388)
- (회신기한) 2023. 9. 4.(월)

#### ③ 별도 연락·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, 말소 절차 이행 예정

# 도지사 지시사항

◇ 2023. 8. 11.(금) 11:00 간부회의 시

관리 번호	지시 제목	지시 내용
2023-6 3	잼버리대원 인터뷰 영상자료 제작	<p>○ 전북에 남아 있는 잼버리 대원들이 떠나기 전에 각 나라별 대표, 팀 리더, 남녀 대원들의 소감 인터뷰를 진행하고 영상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하기 바람.</p> <p>(주관: 자치행정과/협조: 대변인)</p>
	당면·현안업무	<p>○ 잼버리 종료에 따른 소회 및 위기극복에 만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잼버리 기간 도와 시군 직원, 도민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,</li> <li>- 대회기간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므로, 이를 교훈으로 삼아 개선하고 팩트에 기반하여 잘 대응해 나간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임.</li> <li>- 다만, 도민들이 받았을 상처 치유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공직자가 먼저 나서야 할 때이므로,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.</li> </ul> <p>(주관: 전 실국)</p> <hr/> <p>○ 잼버리 기자간담회 추진 및 부정적 보도 적극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잼버리 종료에 따라 잼버리 추진상황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도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기 바람.</li> <li>-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부정적 기사가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, 필요시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 바람.</li> </ul> <p>(주관: 자치행정과/협조: 대변인, 소통기획과)</p>

관리 번호	지시 제목	지시 내용
	당면·현안업무	<p>○ '24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재부 2차 심의가 완료되고 8.16.까지 3차 심의가 진행되므로, 지휘부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총력 대응하기 바람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주관: 전 실국)</p> <hr/> <p>○ 전북특별자치도법 도-국조실 워크숍 대응 철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-국조실 워크숍(8.17.~18.)을 통해 국조실 관계자들이 특례를 숙지하여 부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 바람.</li> <li>- 국조실 관계자를 직접 만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면 한단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,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조실과 소통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부처가 특례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를 보장하여 대응하기 바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주관: 총괄지원과/협조: 전 실국)</p> <hr/> <p>○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행위 기준 준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직자는 친인척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함.</li> <li>- 특히 직무 관련 주식투자, 부동산 거래, 최근에는 비트코인 투자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기 바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주관: 전 실국)</p> <hr/> <p>당면·현안업무</p> <p>○ 부실공사 아파트 논란 대응 철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량판 공법 부실공사 아파트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여 도민 안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주관: 주택건축과)</p>

익산시 공고 제2023 - 2183호

### 익산 도시계획시설(학교/원광대학교)사업 공사완료 공고

익산 도시계획시설(학교/원광대학교)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익 산 시 장

2023년 8월 18일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  - 위 치 : 익산시 신동 128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학교/대학교)(원광대학교)사업
  - 사업의 명칭 : 원광대학교 병원 제2진입로 개선공사
3.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
  - 원광대학교 병원 제2진입로 개선공사 : 1,984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 명 : 학교법인 원광학원
  - 주 소 : 익산시 익산대로 460(신동)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 - 착 수 일 : 2023. 1. 27.
  - 준공예정일 : 2024 12. 31.
6. 관련도서 : 실음생략.

김제시 고시 제2023- 50호

##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장애인평생교육센터 증축공사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0-391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김 제 시 장  
2023년 8월 18일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  - 가. 위 치 : 김제시 서암동 529-3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사업의 종류 : 김제 도시계획시설(공공·문화체육시설/사회복지시설)
  - 나. 사업의 명칭 :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증축공사
3.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
  - 가. 면 적 : 9,460.0㎡(시설결정면적 27,103㎡)
  - 나. 규 모

구분	건축면적(㎡)			연면적(㎡)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장애인 평생교육센터	908.92	24.75	933.67	1,327.89	176.96	1,504.85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김제시장 (경로장애인과장)
  - 나. 주 소 : 김제시 중앙로 40 (서암동)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 - 가. 실시계획인가일 ~ 2024. 12. 31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붙임
7. 관계도서(도면) : 게재생략

(붙임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일련 번호	토지소재지			공부면적 (m <sup>2</sup> )	편입면적 (m <sup>2</sup> 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동	지번	지목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	소계	12필지		9,460.0	9,460.0					
1	서암동	527-1	대	1,498.0	1,498.0	김제시				
2	서암동	528	대	274.0	274.0	김제시				
3	서암동	529-1	대	1,233.0	1,233.0	김제시				
4	서암동	529-2	대	241.0	241.0	김제시				
5	서암동	529-3	대	605.0	605.0	김제시				
6	서암동	529-4	대	1,745.0	1,745.0	김제시				
7	서암동	530	대	575.0	575.0	김제시				
8	서암동	531-3	대	165.0	165.0	김제시				
9	서암동	534-5	대	869.0	869.0	김제시				
10	서암동	534-6	대	1,504.0	1,504.0	김제시				
11	서암동	535-2	대	463.0	463.0	김제시				
12	서암동	535-3	대	288.0	288.0	김제시				

김제시 고시 제2023- 51호

###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(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0-391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김 제 시 장  
2023년 8월 18일

- 1. 사업시행지의 위치
  - 가. 위 치 : 김제시 서암동 516-1번지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사업의 종류 : 김제 도시계획시설(공공·문화체육시설/사회복지시설)
  - 나. 사업의 명칭 :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
- 3.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
  - 가. 면 적 : 6,287.0m<sup>2</sup>(시설결정면적 27,103m<sup>2</sup>)
  - 나. 규 모

구분	건축면적(m <sup>2</sup> )			연면적(m <sup>2</sup> )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장애인복지관	1,251.49	-	1,251.49	2,183.36	694.19	2,877.55	
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김제시장 (경로장애인과장)
  - 나. 주 소 : 김제시 중앙로 40 (서암동)
- 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 - 가. 실시계획인가일 ~ 2024. 12. 31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일련 번호	토지소재지			공부면적 (m <sup>2</sup> )	편입면적 (m <sup>2</sup> )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동	지번	지목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	소계	1필지		6,287.0	6,287.0					
1	서암동	516-1	대	6,287.0	6,287.0	김제시				

- 7. 관계도서(도면) : 게재생략

진안군 고시 제2023-102호

## 진안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3-12호 외 1개소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일원에 전북고시 제1972-133호(1972.05.26.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3-12호선, 소로3-17호선)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진 안 군 수

2023년 8월 18일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13-37, 187-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진안 군계획시설(도로/소로3-12호외 1개노선)사업
  - 나. 명 칭 : 도시계획도로(소로3-12호외 1개노선) 사유토지 보상사업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  - 가. 소로3-12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면적 : 81m<sup>2</sup>
  - 나. 소로3-17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면적 : 63m<sup>2</sup>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진안군수
  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 - 가.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 고시일
  - 나. 준공예정일 : 2024. 12. 31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관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 참고
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

소로3-12호선 편입토지조서

일련 번호	토지소재지		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 리		비고
	읍	리	지번	지목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소계		3필지			102	81					
1	진안	군하	113-37	도로	14	8	임동수	진안읍 군하리 113-14			
2	진안	군하	113-45	대	3	3	임동수	진안읍 군하리 113-14			
3	진안	군하	113-46	대	85	70	임일환	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대평이길 34-5)			

○ 소로3-17호선 편입토지조서

일련 번호	토지소재지		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		비고
	읍	리	지번	지목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소계		1필지			63	63					
1	진안	군하	187-1	대	63	63	이판기	진안읍 군하리 187			

□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

○ 소로3-12호선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	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		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		비고
	읍	리	지번					성명	주소	
1	진안	군하	113-14	담장	콘크리트 H=2m	1	식	임일환	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대평이길 34-5	
				대문	철재 1.3*1.8	1	식			
				대문기둥	0.3*0.3*h=1.8m	2	식			
				주택	콘크리트 시멘트기와 철파이프조	92.62	m <sup>2</sup>			
				창고	스레트 조적조	70.50	m <sup>2</sup>			
				화장실	스레트 조적조	↑				
				가추	스레트 목조	29.66	m <sup>2</sup>			
				바닥포장		50	m <sup>2</sup>			
				장독대		1	식			
				우물		1	식			

진안군 고시 제2023-103호

### 진안 군계획시설(체육공원:월량공원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진안군 고시 제2023-76호(2023. 6. 23.)로 군계획시설(체육공원:월량공원) 결정(변경)된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체육공원:월량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군계획시설(체육공원:월량공원)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진안군수

2023년 8월 18일

- 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5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진안 군계획시설(월량공원:체육공원)사업
  - 나. 명 칭 : 진안 족구장 비가림, 농구장 이전설치공사
- 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  - 가. 규 모 : 367,250㎡(금회 사업면적 : 4,146㎡)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진안군수
  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
- 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 - 가.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 고시일
  - 나. 준공예정일 : 2023. 12. 31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 참고
-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

일련 번호	토지소재지		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		비고
	읍	리	지번	지목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	소계				82,845	4,146					

일련 번호	토지소재지		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		비고
	읍	리	지번	지목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진안	군상	339-11	공	936	16	진안군				
2	진안	군상	339-16	공	7,851	2,025	진안군				
3	진안	군상	342-5	공	9	2	진안군				
4	진안	군하	34	공	57,499	1,193	진안군				
5	진안	군하	36-11	공	839	774	진안군				
6	진안	군하	58	공	15,680	134	진안군				
7	진안	군하	59-2	공	31	2	진안군				